

# 이사회 규정

제정 1964. 6. 24

개정 2024. 3. 25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조 (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4조 (구성)

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 제 5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6조 (종류)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부재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장)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3인 이상의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 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와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0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 나. 재무제표의 승인
    - 다. 정관의 변경
    - 라. 법정준비금의 감소
    - 마. 자본의 감소
    -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및 회사의 계속
    - 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보수의 결정
    - 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나.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다. 준법지원인의 임면 및 준법통제 기준의 개폐 등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라. 그 외 회사경영상 중대한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관련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나.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마. 주식의 소각

바. 사채의 발행

사. 기타 중요한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4.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나.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다.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1조 (위 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서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 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13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제 15조 (의 사 록)

-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한다.

#### 제 16조 (간 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의장은 간사를 지정하고,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17조 (사외이사 지원)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 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 선물, 교통비, 출장비, 수당, 사례비 등을 제공하며,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이사회 규정 제11조 (위임)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

- ① 건별 자본금 50% 미만의 차입
- ②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 ③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 ④ 자본금 10%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 ⑤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의 매입 및 매각
- ⑥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 보증
- ⑦ 거래금액이 자본금 10%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 ⑧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
- ⑨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